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지원 및 지역별 이용권 신청요건 설정〉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85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19.
3. 회부연월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사용,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이나 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발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여 평생교육 격차 심화가 우려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분야 또는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선정·포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한 지원·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4.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② (생략)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신산업 분야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한 지원</u> 4.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선정·포상</u>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u>

⑥ (생 략)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 용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u>성 및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하 여 조례로 평생교육이용권 신 청자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 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 생교육이용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이용권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평생교육프 로그램 제공자를 선정하여 포 상할 수 있다. ⑥ ----- -----회수, 환수 및 제5항에 따른 선정·포상의 기준·절차 · 방법----- -----.
--	--

2. 검토의견

가. 신산업 분야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한 지원

☐ 현행 「평생교육법」 제16조¹⁾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1)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
다. <개정 2021. 6. 8., 2023. 4. 18.>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평생교육진흥사업에 신산업 분야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과 재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산업 분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신산업 분야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²⁾.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신산업 분야 등”은 그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지원대상을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평생교육기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5.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신산업 분야 또는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선정·포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관'과 구분되는 개념인지, 구분된다면 어떠한 범위의 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평생교육³⁾은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각 분야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바, 신산업 분야의 프로그램 제공자를 별도의 지원대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의 선정·포상

- 개정안은 제16조의3제5항에 평생교육이용권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의 선정·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제16조제1항제5호의2에서 이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하나로 규정하려는 것임.

평생교육이용권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를 포상하는 것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포상 대상을 평생교육이용권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로 한정하고 있음. 평생교육 진흥은 프로그램

3)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램의 개발·개선, 평생교육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도 포상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에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에 한정하기보다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자를 포괄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⁴⁾.

다.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요건 설정

-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에는 일반, 장애인, 노인 및 AI·디지털 이용권으로 구분하여 약 11만 5천 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이용권 유형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약 85,000명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약 12,000명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65세 이상	약 8,000명
AI·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30세 이상	약 10,000명

*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26.3.)

특히 2025년부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4)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4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권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담당하고 있음.

- 동법 및 동법 시행령⁵⁾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상 평생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예산 및 지원규모 등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음.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법령상 우선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후 잔여인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를 선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권 신청대상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기도 하는데, 부산광역시 2026년 일반(지역특화) 평생교육 이용권 2차 모집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40세 이상 54세 이하의 시민을

-
- 5) 5)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대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 및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조례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국비 70%와 지방비30%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의 인구구조 및 평생교육 수요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령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평생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우선발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신청요건과 현행법령상 우선발급 대상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신산업 분야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지원 및 우수 제공자 포상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또는 수정수용 의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요건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193